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458호 2016. 6. 16(목)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1297호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
- 사천시 조례 제1298호 사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조례 ----- 5
- 사천시 조례 제1299호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 ----- 10
- 사천시 조례 제1300호 사천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 ----- 13
- 사천시 조례 제1301호 사천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8
- 사천시 조례 제1302호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 22
- 사천시 조례 제1303호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5
- 사천시 조례 제1304호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29

규 칙

- 사천시 규칙 제623호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30
- 사천시 규칙 제624호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 33
- 사천시 규칙 제625호 사천시 시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 44

훈 령

- 사천시 훈령 제318호 사천시 행정서비스현장 운영에 관한 규정 ----- 51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16-563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공고 ----- 60

회 람									
--------	--	--	--	--	--	--	--	--	--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 831-2215 / FAX 831-6011

사 천 시 공 보

제458호(2)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29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6월 1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58호(3)

② 사용료의 연간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주차시설은 이용자에게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광종합지원시설 중 사천 만남의광장 주차시설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주차시설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시설의 관리·운영) ① 시장은 관광종합지원시설 중 사천 만남의 광장 주차시설의 관리·운영을 직영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자 선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58호(4)

[별표 2]

주차시설 사용료(제7조제5항 관련)

1. 일반차량

(단위 : 원)

구 분	주 차 요 금			1일주차권	비 고
	기본(120분)	120분 초과	15분 초과		
소 형	무료	500	250	10,000	
대 형	무료	1,000	500	20,000	

- 비고 : 1) 주차요금표는 관광종합지원시설 중 만남의 광장 주차시설에 적용한다.
2) 운영시간은 매일 08:00 ~ 20:00까지로 한다.
3) 주차권 발부 120분 이내 주차는 무료로 하며, 당일 주차권 분실 시는 1일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4) 72시간 이상 방치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처리한다.

2. 면제차량

- 가.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의 운전차량
다.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관련부서 확인 필)

3. 50퍼센트 감면 차량

-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차량
나. 1,000cc 미만의 경형 자동차

사 천 시 공 보

제458호(5)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29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6월 1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설립·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건전하게 육성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천시에 있는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중 법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58호(6)

제4조(육성 및 지원) 시장은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해당시설이 본래 목적대로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경비지원)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고유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에 대한 경비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관·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경비의 관리) ①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령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당한 시설 운영자는 회수 당한 날부터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대하여 지원경비 사용 전반에 관하여 필요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458호(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지원된 경비가 위법·부당하게 사용 되었거나 운영에 부실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2. 제6조에 따른 지원경비의 관리에 따른 사항
3.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행정국장, 문화관광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의회 의원
3. 문화예술단체 및 관련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사 천 시 공 보

제458호(8)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458호(9)

제13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4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보고 등)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시설 운영자는 시장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58호(10)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29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6월 1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458호(11)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시장은 위임받은 도세와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동장,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①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시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시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지방세법」 제128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시 관할 이외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 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 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시장이 읍·면·동장 또는 리·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리·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58호(12)

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위탁) ① 법 제72조에 따라 교부할 금전 중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시장이 지정한 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 직전연도까지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8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사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458호(13)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0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6월 1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시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시세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458호(14)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에 따른다.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담배소비세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주민세

제1절 균등분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 가. 시에 주소를 둔 개인: 10,000원
 - 나. 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58호(15)

2. 법인의 세율: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절 재산분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신고의무)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절 종업원분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3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사 천 시 공 보

제458호(16)

제4장 지방소득세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장 재산세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사천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458호(17)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부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458호(18)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0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6월 1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14조” 를 “「지역보건법」 제25조” 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에 따라” 를 “에서” 로 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를 “별표 1과 같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을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를” 로 하며, “가산한다.” 를 “더하여 계산한다.” 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58호(19)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수수료의 면제는 공공기관이 공무상 필요에 따라 검사·시험 등을 공문서로 의뢰할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시의 공무수행과 공공보건시책추진에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개별법령 등에 따른 지원대상자(증명서 소지자에 한함)

③ 다른 법령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중에서 본인 부담금을 감면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 환자

사 천 시 공 보

제458호(20)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 유공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공로자와 그 유족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 군인

제15조 중 “허위사실에 의하여” 를 “거짓으로” 로 하며, “자에 대하여
는” 을 “사람에게는” 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 별표 3 및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58호(21)

【별표 1】

제증명발급수수료(제10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수료	비고
1. 건강진단서	1통	500	
2. 채용신체검사서	1통	500	
3. 일반진단서	1통	500	
4. 특별진단서	1통	2,000	
5. 사체검안서	1통	5,000	
6.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	1통	1,500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에 서 규정한 수수료
7. 사망진단서	1통	500	
8. 기 발급 증명서 추가발급	1통	500	
9. 1통 초과발급	1통	500	

사 천 시 공 보

제458호(22)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0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6월 1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58호(23)

제3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준용)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및 감경, 이의 신청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58호(24)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사항이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 나.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영업(소)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에 해당 영업(소)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 등)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1.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나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한 경우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제1호	100	200	300
		100	200	300
2.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제2호	100	200	300

사 천 시 공 보

제458호(25)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0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6월 1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예방접종의 위탁)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예방접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중 “예방접종 후 30일 이내” 를 “예방접종 후 ” 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58호(26)

[별지 제1호서식]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앞쪽)

제1조	계약목적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제2조	“을”	의료기관명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종별		표 시 과 목		
		주소(소재지)				
		전 화		전자우편주소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면허종별		면 허 번 호		
		의료정보시스템	<input type="checkbox"/> 사 용 ※ 사용사업체명 : _____ <input type="checkbox"/> 미사용			
제3조	위탁계약 조건	별지 뒷면 참조				
제4조	위탁계약 범위	<input type="checkbox"/>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예방접종업무 <input type="checkbox"/> 만 65세 이상 노인 대상 예방접종업무				
제5조	신의성실 및 위탁계약의 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갑은 ①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을이 제2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	계약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p>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p>						
<p>년 월 일</p> <p><갑> 기관명 : _____</p> <p> 대표자 : _____ (서명 또는 날인)</p> <p><을> 의료기관명 : _____</p> <p> 대표자 : _____ (서명 또는 날인)</p>						
첨부서류	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 ²]						

사 천 시 공 보

제458호(27)

(뒤쪽)

< 위탁계약조건 >

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위탁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사업 실시 이전에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④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상환을 신청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에 따라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한다.
- ⑤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 ⑥ 개인의 과거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58호(28)

[별지 제2호서식]

사천시○○-○○○호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

1. 의료기관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예방접종업무 위탁범위 :

귀 기관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 120g/㎡]

사 천 시 공 보

제458호(29)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0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6월 1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를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로 한다.

제9조제3항 본문 중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를 “제19조의5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58호(30)

규 칙

사천시 규칙 제623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6월 1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주차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와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의 운영시간)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주차시설(이하 “주차장”이라 한다) 운영시간은 08:00~20:00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주차요금 징수 방법) 주차요금의 징수는 주차권 교부와 주차할인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458호(31)

1. 주차장 입구에 주차권 발급기를 설치하여 차량 진입 시 주차권을 교부하고, 나갈 때에 교부 받은 주차권을 회수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2. 주차할인권의 경우에는 주차권과 주차할인권을 함께 제시하여 주차요금을 정산한 후 징수한다.
3. 주차요금은 주차권 및 주차할인권 회수와 동시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4. 주차요금의 면제·감면대상 차량은 주차요금 면제 등의 확인증을 주차권과 함께 요금계산소에 제시하여야 한다.
5. 주차권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주차시간 및 요금을 산정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1일 주차요금(10시간 기준)을 징수한다.

제4조(징수요금 관리) ① 시가 직영하는 경우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은 다음날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위탁 관리·운영 시 관리원은 당일의 수납사항에 대하여 일일 결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자동차의 훼손·도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① 주차장내에서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원에게 신고하고,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사 천 시 공 보

제458호(32)

제6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장기 방치된 주차 차량에 대하여는 이동명령서를 해당차량에 부착하여 견인차량 보관소로 이동시킨다. 이 경우 주차료, 견인료, 보관료 등은 차량소유주가 부담한다.

제7조(주차거부)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할 때
2. 이용자 또는 동승자가 주차장내 질서를 문란 시킬 때
3. 주차장을 주차장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제8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내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한다.
2. 주차장 출입 차량은 주차구획·주차안내표시 및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주차 하여야 한다.
3. 차량 내 귀중품의 보관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관리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주차장 내에서는 시속 15킬로미터 이하로 서행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58호(33)

규 칙

사천시 규칙 제624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6월 1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사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58호(34)

2. “징수부서의 장” 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 이란 사천시 금고(이하 “시금고” 라 한다)와 그 수납대행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및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과세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과세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5조(납세고지서 등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등기우편이나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접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서류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수령증을 수령하고, 직접 교부한 경우에도 송달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부에는 송달일자 및 수령인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아야 하며,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 송달부에 첨부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58호(35)

④ 세무공무원은 우편으로 송달한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 등이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보통징수방법에 의한 징수결정) ① 시세를 부과할 경우 부과부서의 장은 징수원인·세액·소속연도·세입과목·납세의무자·납부기한·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징수결정액 통지부를 정리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세입징수결정액 통지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수납부를 첨부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납부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관리하여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납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산파일에 수록하거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수납부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공유물건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과 소유지분
2. 상속인에 대한 부과결정의 경우에는 상속인 수, 상속인의 인적사항 및 상속지분
3.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수, 공동사업자 인적사항 및 지분

사 천 시 공 보

제458호(36)

④ 제2항 및 제3항의 통보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부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다를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신고납부방법에 의한 징수결정) 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시세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날짜별로 별지 제8호서식의 수납부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수납기관으로부터 신고납부한 시세의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부과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수납부에 제9조에 따라 수납인을 날인하거나 전자소인을 하여 이를 즉시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납부를 전자적 형태로 처리하여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납인을 소인하여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③ 부과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수납자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수납액에 대하여 즉시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고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의 징수결정액 통지부를 작성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미납부자에 대하여는 원인을 규명하여 보통징수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58호(37)

⑤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납자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사후 징수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자의 개별수납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수납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하여 징수부서의 장과 공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통보된 것으로 본다.

제8조(납세고지서의 작성) 법 제55조에 따른 납세고지서의 작성은 전산으로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관계법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소인) 징수부서의 장이 수납기관으로부터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납부에 수납인으로 소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소인할 수 있다.

제10조(납기마감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은 수납기관에서 통보된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수납부에 소인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는 체납부를 작성하여 가산금·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 및 처리할 수 있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여 해당 체납지방세가 징수 또는 감액, 소멸시효 등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으로 전산관리 및 자료송부 등을 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458호(38)

제11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하고,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부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다를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12조(결정취소 및 오류정정) ① 부과부서의 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세부과 결정내역을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한 후에 불복청구, 결정착오, 감면결정 등의 사유로 당초 부과결정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으로 전산관리 및 자료송부 등을 할 수 있다.

③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다를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사 천 시 공 보

제458호(39)

제13조(지방세 체납정리표 작성) 독촉기한 내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정리표를 작성하여 징수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체납처분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정리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세입징수 결과제출) 시장은 매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시세에 대한 세입징수보고서를 작성한 후 그 다음 달 15일까지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시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해당 연도 출납폐쇄기일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시세에 대하여는 다음해 2월 11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시세는 결손처리하고 체납액 정리부 작성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에 징수결정한 시세로서 해당 연도 출납폐쇄기일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 연도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하여야 하며 동시에 해당 연도의 장부를 각각 정리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세환급금의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이 시세를 수납한 후에 부과부서의 장으로부터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세를 시세환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58호(40)

② 징수부서의 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세감액결정이 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다를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시세환급금의 지급) ① 시세환급금은 체납된 시세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법인합병 등에 대한 시세환급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합병한 이후에 피합병 법인에게 귀속하는 시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
2. 법인이 해산한 이후에 시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청산인
3. 단체가 해산한 이후에 시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대표자
4. 시세환급금에 관한 권리가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

③ 피상속인이 납부한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에게 환급한다. 다만, 상속 등기·등록된 재산에 대한 환급금인 경우에는 공부에 기재된 상속지분에 따라 환급한다.

④ 연대납세의무자와 관련된 시세환급금(연대납세의무자가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시세는 제외한다)은 환급통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연대납세의무자로부터 별지 제16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시세환급금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환급통지를 하고,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58호(41)

제18조(시세환급금의 충당) 영 제64조에 따라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시세환급금의 통지 등) ① 시세환급금통지서는 지급 대상자에게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세환급금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내역을 기록·관리하고, 거소지를 확인하여 재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세환급금통지서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 또는 송달불능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송달불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8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유가증권 중 매매 사실이 있는 것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사 천 시 공 보

제458호(42)

② 법 제8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제21조(교부금전의 예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배분금전예탁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 배분계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결손처분의 결정) 법 제96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결손결정결의서와 별지 제20호서식의 결손처분표(갑,을)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결손처분의 취소) 연도폐쇄를 한 후에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는 징수부 이월액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이월액에 취소로 인하여 발생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이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가산금을 가산하여 기재한다.

제24조(결손처분의 사후관리)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결손처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시까지 계속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세무공무원은 사후관리과정에서 결손처분된 자의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58호(43)

3. 제2호에 따라 재산압류통지를 할 때에는 통지서 비고란에 결손처분 및 결손처분 취소의 시기와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5조(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시장은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458호(44)

규 칙

사천시 규칙 제625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시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6월 1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시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사천시 시세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시세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시세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대장 비치) 사천시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사 천 시 공 보

제458호(45)

제2장 담배소비세

제3조(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세

제1절 균등분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균등분)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절 재산분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58호(46)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재산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3절 종업원분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4장 지방소득세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사 천 시 공 보

제458호(47)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소득세(소득세분)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 지방소득세(양도소득)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장 재산세

제13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58호(48)

제14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사유 등을 기재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물납 및 분납)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납세관리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7조(분할납부) 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58호(49)

③ 부과부서의 장은 분할납부 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연세액 일시납부) 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20조(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 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58호(50)

제2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2조(대장 등의 관리) 이 규칙에 따른 대장 등을 정보처리매체로 작성하여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부칙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458호(51)

훈 령

사천시 훈령 제318호

사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6년 6월 1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사천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시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행정서비스헌장” (이하 “헌장” 이라 한다)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 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58호(52)

② “고객”란 시민과 시정에 직접·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단체·기업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③ “행정서비스”라 함은 행정기관이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

④ “고객만족도”라 함은 시정의 주요정책과 그 집행,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민원인 편의시설 등 시민이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시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및 그 기관은 이를 준용 할 수 있다.

제2장 현장의 제정과 공표

제4조(현장의 제정) ① 실·과·소장 등은 당해 부서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업무분야별로 현장을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제3조2항에 따른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을 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현장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성실하게 운영하여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58호(53)

제5조(현장의 개정) ① 실·과·소장 등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현장의 내용을 개정하여야 한다.

1. 현장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실천가능성이 없는 경우 또는 현장의 내용을 실천하는 것이 극히 비능률적이어서 행정력의 낭비가 심한 경우

2. 고객의 타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

3. 새로운 정책이나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

제6조(현장의 제정 및 개정 원칙) 현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고객중심의 원칙 :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중심적일 것

2. 서비스 구체성의 원칙 :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계량화된 내용을 제시할 것

3. 최고수준 서비스 제공의 원칙 : 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

4. 비용·편익 형량의 원칙 :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

사 천 시 공 보

제458호(54)

5. 체계적 정보제공의 원칙 :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

6.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의 방법·절차·기준을 명확히 할 것

7. 고객참여의 원칙 :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할 것

제7조(서비스 기준의 설정) 고객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의 기준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내용을 제시할 것

2.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이나 외국기관의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이와 대등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 서비스의 제공에 드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형량하여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제8조(서비스 관련 정보) 현장에는 고객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패·공무원증의 부착 등 고객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

2.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

3. 상담결과 통지의 방법·절차와 소요기간의 명시

4.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458호(55)

5. 관련정보나 자료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

6. 관련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의 제시

제9조(현장의 제정·개정절차) ① 현장을 제정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때에는 현장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그 고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현장 제정·개정안은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천시행정서비스현장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현장을 확정하여 공표 한다.

제10조(현장의 공표) 실과소장은 현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보나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장 현장의 운영과 관리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현장의 제정 및 운영을 위하여 사천시 행정서비스현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현장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현장내용의 심사
3. 현장의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
4. 행정서비스 우수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

사 천 시 공 보

제458호(56)

5. 그 밖에 현장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다른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이 초과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학식이나 행정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해당 분야의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하되,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현장의 제정 및 운영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458호(57)

제14조(시행결과 평가 및 환류) ① 현장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는 위원회에서 분석 평가한다.

② 제1항의 현장 시행결과 분석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2. 다음 연도 현장에 반영 개선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3. 우수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

③ 제2항의 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현장에 반영하고, 그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및 우대조치)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조사결과 현장관련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 및 공무원 개인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백서의 발간) ① 시장은 현장관련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종합해서 시정백서에 포함하여 발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간되는 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의 제정 및 보완 개선내용
2. 분야별 서비스 기준의 설정 현황
3. 행정서비스의 개선실적
4. 현장 시행에 대한 평가결과(고객만족도 조사 포함)
5.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현황

사 천 시 공 보

제458호(58)

제4장 고객불편사항의 처리 및 보상

제17조(불편·불만사항의 접수 및 처리) ① 현장에 관한 고객의 불편사항은 구술·전화·서면·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시로 접수한다.

② 현장제정 부서의 장은 고객의 불만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한 후 불만사항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처리 및 보상의 범위) ① 현장제정 실과소장이 현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행정서비스 관련고객에게 보상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며, 관계공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시정 또는 보상을 청구한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한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② 제2항에 따라 시정 또는 보상하여야 할 고객 불편 사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을 법정처리기간 또는 각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2. 관계공무원이 각종 공부를 착오로 기재하여 고객에게 불편을 준 경우
3. 한 건의 민원 또는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착오·과실 또는 무성의한 처리로 인하여 고객 또는 이해관계자가 동일한 행정기관을 두 차례 이상 방문한 경우
4. 그 밖에 행정기관이 대외적으로 공표한 행정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458호(59)

③ 구체적인 시정·보상기준과 보상금액은 각 분야별 헌장으로 정한다.
제19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서비스 헌장규정(대통령 훈령 제257호)을 준용한다.

부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사천시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 ③(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제정된 분야별 행정서비스헌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본다.

사 천 시 공 보

제458호(60)

공 고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공고

사천시 공고 제2016 - 563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을 「수산업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내역

면 허 번 호	사천양식 제 28 호	
면 허 면 적	1.9 ha	
어 업 의 종 류	어류등양식	
어 업 의 방 법	가두리식	
어 장 의 위 치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지선	
포획·채취·양식물	어류	
어 업 의 시 기	연 중	
면 허 기 간	2006. 6. 13. ~ 2016. 6. 12.	
연 장 허 가 기 간	2016. 6. 13. ~ 2021. 6. 12.	
허가일자 및 번호	2016. 6. 3. 제2016-1호	
어업권자	주 소	사천시 서포면 서포로 272
	성 명	사천수산업협동조합장 외 3(김정경, 김정순, 이이레)

면 허 번 호	사천양식 제 29 호	
면 허 면 적	1.9 ha	
어 업 의 종 류	어류등양식	
어 업 의 방 법	가두리식	
어 장 의 위 치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지선	
포획·채취·양식물	어류	
어 업 의 시 기	연 중	
면 허 기 간	2006. 6. 13. ~ 2016. 6. 12.	
연 장 허 가 기 간	2016. 6. 13. ~ 2021. 6. 12.	
허가일자 및 번호	2016. 6. 3. 제2016-2호	
어업권자	주 소	사천시 서포면 서포로 272
	성 명	사천수산업협동조합장 외 3(김수봉, 김혜정)

2016년 6월 3일

사 천 시 장